

[개정 전문]

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

제 정 2022.11.21. 고시 제2022-103호

개 정 2026.10. 7. 고시 제2026-118호

산림청(산림복지교육과), 042-481-184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평가대상 및 시기 등)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산림복지전문업은 제외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는 당해 평가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한다.

제3조(평가항목 등) ①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항목은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영역량,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수준 및 품질 향상 노력, 수요자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가중치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제4조에 따른 평가심의회회의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(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)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다음 각

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를 구성·운영한다.

1. 산림복지전문업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평가항목 등의 설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
3. 평가결과 확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
4.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의를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평가제도 개선 및 운영 관련 심의가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의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 구성·수당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평가계획의 수립)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매년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평가계획은 제2조 및 제3조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4조에 따른 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제6조(현장평가)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현장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.

제7조(평가결과)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통보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제8조(이의신청) ① 제7조에 따라 통보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③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평가결과 활용)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에게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, 역량 강화가 필요한 산림복지전문업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10조(재검토기한)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 〈제2026-118호, 2026. 10. 7.〉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